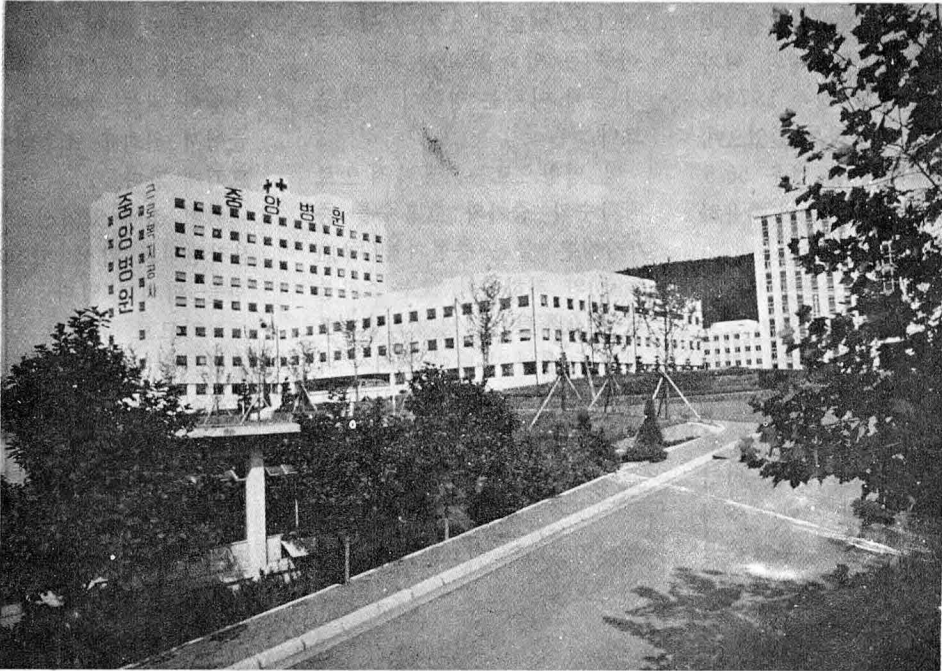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아서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편



소재지 : 경기도 인천직할시 북구 구산동 산73번지  
원장 : 조성현  
보건관리실장 : 이영수



### 1. 개요

당병원은 근로복지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전액 투자기관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산업재해환자 및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 산업보건의 연구 개발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의료시혜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고 1983년 2월, 18개 진료과와 4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산업보건의 전담부서인 보건관리실에서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지도, 근로자 건강진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 노인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책임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유해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에 힘쓰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 병원은 보건관리실의 각 분야별 전문요원을 비롯하여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간호과 및 임상各科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주요 산업보건 사업

### 1)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내지 제 48조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으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현지출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차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은 래원하여 본원의 임상各科와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하고 정밀진단 결과 일반병 또는 직업병 등으로 확진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작업조건,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진단은 현지 출장하여 1차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진폐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2차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며 광산 채용시 검진 및 이직자 검진은 래원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건강진단, 채용시 건강진단, 종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지도

특수건강진단 관할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신 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전담반이 구성되어 정확하게 측정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개선등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검진 결과 직업병 판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3) 산업보건 상담

보건관리실에 산업보건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검진 출장시에도 산업보

건 전반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 4) 보건담당자 보건교육 지도

사업장 순회 검진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없는 곳에는 보건담당자와 면담하여 질병 이환자 조기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진료안내, 재해자 응급처치법, 개인보호구 착용의 필요성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향후 사업추진방향

1)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수검진 대상 사업장과 특수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업장은 충분한 계몽 및 홍보 활동으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의 누락을 방지하여 질병 및 유해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2) 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 도모

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카-드, 작업환경측정 카-드를 비치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질병 이환자 사후 관리등을 지속적으로 계몽, 개선 지도토록 하고 질병 및 유해요인의 재발 방지에 주력 할 것이며 카-드관리 시스템은 전산화 방안을 수립 계획하고 있다.

### 3) 직업병에 대한 연구활동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진폐증, 소음성 난청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강화된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해 현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요인을 당공사의 직업병 전문 연구소인 진폐 연구소와 연계 협의 및 연구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